

특임회장단운영규정

제 정: 2016.11.21.(이사회 승인)

제1조 (목적) (사)한국철도학회 회원으로 한국철도의 발전을 추구하고, 철도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한국철도학회 특임회장단은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철도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학회에서 위임 또는 요청받은 사항
3.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4. 기타 한국철도학회 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회원의 자격) 특임회장단의 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인회원은 한국철도학회 회원으로서, 3인 이상의 특임부회장이 추천하여 한국철도학회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 법인회원과 명예회원은 5인 이상의 특임부회장이 추천하여 한국철도학회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4조 (정원) 특임회장단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정원 외의 명예직으로 한다.

제5조 (특임회장단 운영위원회)

- ① 특임회장단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본회의 장은 수석특임부회장으로 하고, 특임회장단에서 선출한다.
- ③ 수석특임부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은 총무 및 홍보 그리고 분야별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수석특임부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한다.
- ② 수석특임부회장은 정기회를 분기별로 연 4회 소집한다.
- ③ 수시회의는 수석특임부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수석특임부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 (운영세칙) 특임회장단은 본 규정의 운영과 회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부칙 (2016.11.21.)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한국철도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특임회장단운영규정시행세칙

제 정: 2016.11.21.(이사회 승인)
최근개정: 2017.03.0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철도학회 특임회장단 운영 및 회비(기부금 포함)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수립)

- ① 회비의 효율적으로 집행을 위하여 매년 초 연간 사업 및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② 제1항의 연간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정기회 분기별로 연 4회 및 수시 대한 비용
 2. 특별강연 초청 인사에 대한 사례
 3. 각 종 서면, 자료 등 제작비용
 4. 한국철도학회에 대한 기부금
 5. 회장단 친목을 위한 비용
 6. 기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석 특임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집행

제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비) 법인은 연회비로 50만원을 납입 한다. 단, 개인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5조(회계)

- ① 특임회장단 회비의 운용을 위한 별도계좌를 개설 한다.
- ② 통장의 관리와 회계처리는 학회가 한다.
- ③ 수석특임부회장은 매년 결산하여 학회운영위원회, 이사회와 특임회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21.)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한국철도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8.)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특임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